

[별지 제15호의3서식의(가)] <개정 2019. 5. 30.>
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

(앞 면)

예비후보자 홍보물

보내는 사람 주소

성명

우편번호

받는 사람 주소

성명

우편번호

○○우체국

요금별납

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.

(뒷면)



- 주 1. 이 봉투는 예비후보자가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보내는 데 사용합니다.
2. 봉투의 규격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합니다.
3. 이 봉투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4. 이봉투의 뒷면에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

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

1. 선거명(선거구명) :
2. 예비후보자 성명 :
3.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내역

구 분	제 작 내 역				비 고
	인 쇄 사			작성수량	
	명칭	주 소	전화번호		
발송용 봉투					
예비후보자홍보물					

4. 발송내역

발송일시	발송대상 · 지역	발송수량 (금회/누계)	발송우체국명
		/	
		/	
		/	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붙임 :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

년 월 일
신고인 : 예비후보자 ○○○ 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- 주: 1.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"선거구명"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2. "발송대상 · 지역"란에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시 · 도 단위로 적고, 시 · 도지사선거에서는 구 · 시 · 군 단위까지 적으며, 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 시 · 도의원선거, 지역구 자치구 · 시 · 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· 시 · 군의 장 선거에서는 읍 · 면 · 동 단위까지 적습니다.
3. "발송수량"란에는 발송대상 · 지역별로 발송할 수량을 적되, 누계는 신고횟수와 상관없이 최초 발송수량부터 합산해야 합니다.
4.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5.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제출은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
6.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.